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,

○「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제정에 따라 공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

3. 주요내용

○ 사용허가(안 제4조)

- 사용기간 : “3년을 원칙으로 하며” → “5년 이내로 하며”

○ 임시시장 운영 및 지역특산물 홍보·전시·판매 관련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재정법」등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22~2019. 11. 11, 이상없음

○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【기획감사실-10166(2019.10.11.)】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【가족지원과-41931(2019.10.14.)】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제정에 따라 공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,

○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임시시장 운영과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·판매 관련 조항을「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제정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